

1. 의결주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1호, 2023. 1. 3. 제정, 2023. 7.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스마트제조혁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기본계획의 확정이나 변경 시 공고함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의 지정 내용과 업무 및 스마트제조혁신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다.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라.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의 신청 및 수준확인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
- 마.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계획수립·시행 절차와 전문기관의 지정 내용 및 업무를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 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공급기업 육성, 보안 강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함

(안 제14조~제18조)

사.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19조)

아. 국제협력 및 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20조~제21조)

자. 스마트제조혁신 규제개선 신청 절차 및 심의기준을 규정함(안 제22조)

차. 추진기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고를 규정함(안 제23조)

카.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기준, 권한의 위임·위탁 등 법률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4조~제2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표준화 및 보안 강화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2.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인력 지원
3.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스마트공장 실증구축 지원
5.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6.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추진기관 지정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추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추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추진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대상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업 현황
2. 스마트공장의 현황, 수준 및 보급성과
3.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 현황
4. 기업의 제조데이터 보유 및 활용현황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실시
2. 수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표준 확보
2.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컨설팅
3.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로봇 활용
4.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5.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가상제조 활용
6.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내외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7.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급기술의 표준화, 융합 및 실증 지원
2.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 실증 지원
3.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간의 협동 촉진 지원
4. 그 밖에 기술경쟁력 제고 관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대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이하 “신청기

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에 신청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의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확인하며 이를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구축솔루션 및 자동화기술 수준 등을 측정하는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2. 기업의 경영전략, 스마트공장 운영 능력 등 종합적인 역량을 측정하는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준확인이 완료된 후에는 신청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지원목적
2. 지원 내용 및 기간

3.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규모

4. 신청 자격·절차 및 방법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및 관리계획

2.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 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 및 구매 지원

2. 제조데이터 관련 교육·컨설팅 및 홍보

3. 제조데이터 관련 국제기술협력

4. 그 밖에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하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
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은 별표 2와 같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
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디지털 클러스터 관련 유망분야 수요 발굴

2.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연구기획 및 기술개발 지원

3.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지원

4. 디지털 클러스터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5조(공급기업 육성 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급기업의 역량진단 및 컨설팅 지원

2. 공급기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3. 공급기업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공급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5. 공급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및 협력사업 지원

6. 그 밖에 공급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보안 강화 지원)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보안역량 실태조사

2. 보안 가이드라인 보급 지원

3. 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보안기술 개발 지원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3. 전문인력의 채용 연계 지원

4. 퇴직 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근로환경 개선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발·구축 지원

2. 영세 제조기업 노후설비 개선 지원

3. 제조현장 공정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9조(우수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촉진 지원)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인력 및 기술의 국제교류 지원
2.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정책 공동조사·연구
3.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의 국제표준 공동 연구·개발 및 도입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21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관련 사업
2. 해외 협력기관 발굴 및 협력모델 개발에 필요한 수요조사
3. 해외 협력모델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해외협력모델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22조(규제개선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려는 기업 등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의회는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심의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업무수행 상황 등의 보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추진기관, 법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업무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관련 자료 제출·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라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참여 제한 기간 감면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인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대표자의 사망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 환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에 관한 기준은 영 제24조제3항각호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비 환수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 참여 제한에 관한 업무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스마트제조혁신촉진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6조 제4항제2호	시정 명령	업무 정지	지정취소

[별표 2]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제조데이터 활용 관련 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4항제2호	시정 명령	업무 정지	지정취소

[별표 3]

참여제한 사유 및 처분기준(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참여제한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나.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가 서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한다.
-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서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5년 이내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3년 이내
다.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3년 이내
라.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3년 이내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3년 이내
바.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24조제1항	
1)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24조제1항제1호	3년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관련 자료 제출·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24조제1항제2호	2년 이내

[별표 4]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제25조제1항 관련)

환수 사유	근거 법조문	환수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사업비 전액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사업비 전액. 다만, 제25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사업비 전액 이내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사업비 전액
5.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24조제1항	
가.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24조제1항 제1호	사업비 전액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관련 자료 제출·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24조제1항 제2호	사업비 전액 이내